

사회선교사운영위원회 시행세칙

제1장 사회선교사운영위원회

제1조 (목적)

사회선교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교단의 사회선교 정책을 따라 하나님의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JPIC)'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감당할 사회선교사를 발굴,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계획·집행한다.

1. 사회선교사의 선발과 파송
2. 사회선교사 관련 제반 교육·평가 프로그램 수립 및 집행
3. 사회선교사 지원을 위한 모금 및 기타 사업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임원 3인(위원장, 부위원장, 서기)과 위원회 파송 위원 3인(전문인 1인 포함)
2. 총회 평화통일위원회 임원 2인(위원장, 서기)과 위원회 파송 위원 3인(전문인 1인 포함)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임원)

본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이며, 임기는 1년이고 정기회의에 선임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정기회)

본 위원회 정기회는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와 총회 평화·통일위원회의 정기회 후 개최한다.

제2장 사회선교사

제7조 (사회선교사)

1. 사회선교사는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교단의 파송을 받는다.
2. 사회선교사는 총회 및 노회에서 파송할 수 있다.
3. 사회선교사는 총회가 파송한 특수선교 기관 교역경력으로 인정한다.
4. 사회선교의 특수성을 따라 평신도 사회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제8조 (자격)

1. 목사, 준목, 전도사로서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신도의 경우,
 - 1) 무흠 입교인으로 3년을 경과한 자로서, 전문 분야의 경력이 있고, 당회장과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 2)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3. 노회의 추천을 받은 사회선교사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사회선교사가 될 수 있다.

제9조 (임기)

임기는 1년이며 위원회의 결의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임무)

사회선교사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총회의 선교신학에 입각하여 대사회적인 선교활동을 전개한다.
2. 총회 사회선교의 주제를 교회와 노회 실정에 맞게 공론화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3. 교단의 공교회적 신앙고백과 대외적 에큐메니컬 선교정신 아래, 지교회 간, 교회와 기관 간, 교회와 사회단체 간의 연합사업을 도모하며, 다양한 선교사역을 수행한다.

제11조 (임무 부여)

사회선교사의 임무와 선교사역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의무)

사회선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평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3장 선발과 파송

제13조 (재정지원)

1. 운영위원회는 사회선교사에게 년 일정액을 활동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사회선교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총회 차원에서 모금을 할 수 있다.
3. 노회는 노회 파송 사회선교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선발과 파송)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와 평화·통일위원회 또는 노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발 파송한다.

제15조 (절차)

1. 지원자 서류 제출
 - 1) 지원서
 - 2) 당회장 추천서
 - 3) 노회장 또는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추천서
 - 4) 이력서
 - 5) 심리검사 결과서

2.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또는 평화-통일위원회 심의결과 및 추천결의 회의록(정기 회, 임시회)
3. 추천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본 위원회의 심사 후 선발한다.

제4장 교육 및 평가

제16조 (교육)

선발된 사회선교사는 본 위원회의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 사회선교사는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집중교육 : 연 1회 집중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3. 주요내용 : 성서연구, 사회정세연구, 영성, 직무교육 등

제17조 (평가)

사회선교사는 분기 및 종합 활동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평가하여 계속 파송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 (회계연도 및 감사)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총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19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모금과 사업 수익금 및 총회 지원금,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제6장 개정 절차

제20조 (개정)

이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법규를 준용한다.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